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일로쳐요 의료사고 **1670·2545** 의료분쟁 상담센터

의료분쟁 ! 함께 풀어요

2018. 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안 내 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 4. 9.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이 안내서는 의료분쟁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과 보건의료기관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분쟁 당사자 중 상대적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의학지식이 부족한 환자 측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 2. 대응방안, 3. 해결방법 순으로 분쟁의 발생부터 분쟁해결제도까지 다양하게 기술하였으며 세부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문에 기술된 내용은 의료분쟁을 처리하는데 일방의 주장이나 근거로 사용 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안내서가 환자 측과 보건의료기관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여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7. 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팀

순서

I.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1

- ① 의료사고 · 의료분쟁 · 의료과실 이란? 2
- ② 의료분쟁의 특징 3
- ③ 의료분쟁 대상 여부 판단 3

II.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9

- ①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을 들어 보세요 11
- ② 동시에, 모든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확보하세요 13
- ③ 사망 사고의 경우 적극적으로 부검을 고려하세요 15
- ④ 보건의료기관과 처리방안을 협의하세요 16
- 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상담하세요 17

III.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19

- ① 의료분쟁 당사자 합의 21
- ② 대체적 분쟁 해결(ADR) 23
- ③ 민사소송(의료소송) 28
- ④ 형사소송 31

질의 / 응답 35

붙임 53

- 1. 의료사고 경위 요약 54
- 2. 진료기록 서식 종류 55
- 3.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제도 안내 58

제1장.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의료사고가 곧 의료잘못은 아닙니다

1 의료사고 · 의료분쟁 · 의료과실 이란?

- (의료사고)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의료사고란, 병원·의원·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 (의료분쟁)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다툼을 말합니다.
- (의료과실)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조산·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합니다.
-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 판례에 의하면,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아기를 분만한 후 사지운동장애, 언어장애, 의식불투명 등 뇌증후군이 발생한 것은 의료사고이지만, 그 원인이 의사가 시행한 의료행위 상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대 의학으로는 사전예견이나 치료가 어려운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의 특이한 체질에 기인한 것이라면 의료과실은 아니다[대법원 1975.5. 13. 74다1006]” 고 하였습니다.



2 의료분쟁의 특징

- (일반적인 분쟁과의 차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운전행위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의료분쟁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침습성, 구명성, 필수불가결성, 주의의무의 고도성과 신뢰성, 개별성과 예측 곤란성, 동태성, 긴급성, 전문성과 소통의 필요성, 재량성, 비공개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 등의 다양한 특수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8쪽 참조)

이러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행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나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3 의료분쟁 대상 여부 판단

-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상 의료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진료채무의 수단 채무성) 의료인이 환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다해야 할 채무, 이른바 수단채무입니다.

- (무과실 의료사고) 질병 그 자체가 비가역적인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 없이도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기 전의 상태, 병원에 갈 때의 기대감, 그리고 치료 후의 나쁜 결과만을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의사의 재량권)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①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의 입증에 가능해야 합니다.

- ◆ (입증책임 완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의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첫째,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의료인의 과실은 통상의 의사 또는 평균적인 의사가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 ◆ (의사의 결과예견의무 및 결과회피의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도1678 판결>

- (손해의 발생) 환자가 기대하였던 치료 효과에 반하여 나타나는 나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 (상당 인과관계)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있고,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항상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나쁜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둘째, (보건의료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 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 (설명 의무)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 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4.15. 선고 93다60953 판결 손해배상(기)>
- ◆ (보건의료인의 설명의무)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④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의료법」 제24조의2제2항)

② 의료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보건의료인이 반드시 형사적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사건을 해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려는 생각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 치사상으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고 신속한 사건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고소·고발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될 경우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일반적이나, 역으로 민사적 책임을 진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반면 형사상의 책임은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비난이 형벌을 부과할 정도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민사책임과 같이 당해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인과관계의 인정은 인권 보장적 입장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의 인과관계는 나쁜 결과가 특정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명백할 때에만 인정되고, 사실상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이러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의료사고로 인한 나쁜 결과의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병원 측은 민사적 배상마저 소송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 결국은 사건이 확대되고 장기화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의료과실이 중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적 처벌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나, 의료분쟁의 해결일환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형사적 과실이 확실하지 않다면 고소·고발보다는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의료행위의 특수성 >

- **(침습성)** 의료행위는 신체의 일부를 절개하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거나 정신 및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구명성)** 의료행위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행위에 비하여 도덕성이 우월하다고 평가되고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감소
- **(필수불가결성)**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이며 그로 인하여 진료거부가 금지됨
- **(주의의무의 고도성과 신뢰성)** 사람의 생명, 신체를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하여 침습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맞추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여야 할 의무와 예견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됨
- **(개별성과 예측곤란성)** 인간은 기계와 달리 체격, 체질, 체력, 면역력, 약물에 대한 반응 등이 각기 다르고 다양하여 같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특이체질로 인하여 통상의 사람과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어 환자 개개인에 맞춰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그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움
- **(동태성)** 질병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고정될 때까지는 그 증상이 매우 유동적인 경우가 적지 않아 의료인은 가정적, 추정적, 잠정적 진단에 입각하여 초기 진료를 실시하고 질병의 경과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치료에 임함
- **(긴급성)** 질병은 한번 발생하면 일정 기간까지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처하는 의료행위는 시간적 제약을 가지고 긴급하게 단행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짐
- **(전문성과 소통의 필요성)** 의료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습득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며, 환자는 질병의 진단이나 약의 처방, 수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지식이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 **(재량성)** 의료행위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경과를 살피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음
- **(비공개성)** 위생상의 이유나 시술과정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목적으로 의료행위의 전 과정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함
- **(정보의 편중성)** 의료행위가 가지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의료인이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취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그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등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
- **(독점성)** 의료행위의 침습성으로 인하여 의료법상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독점성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인에게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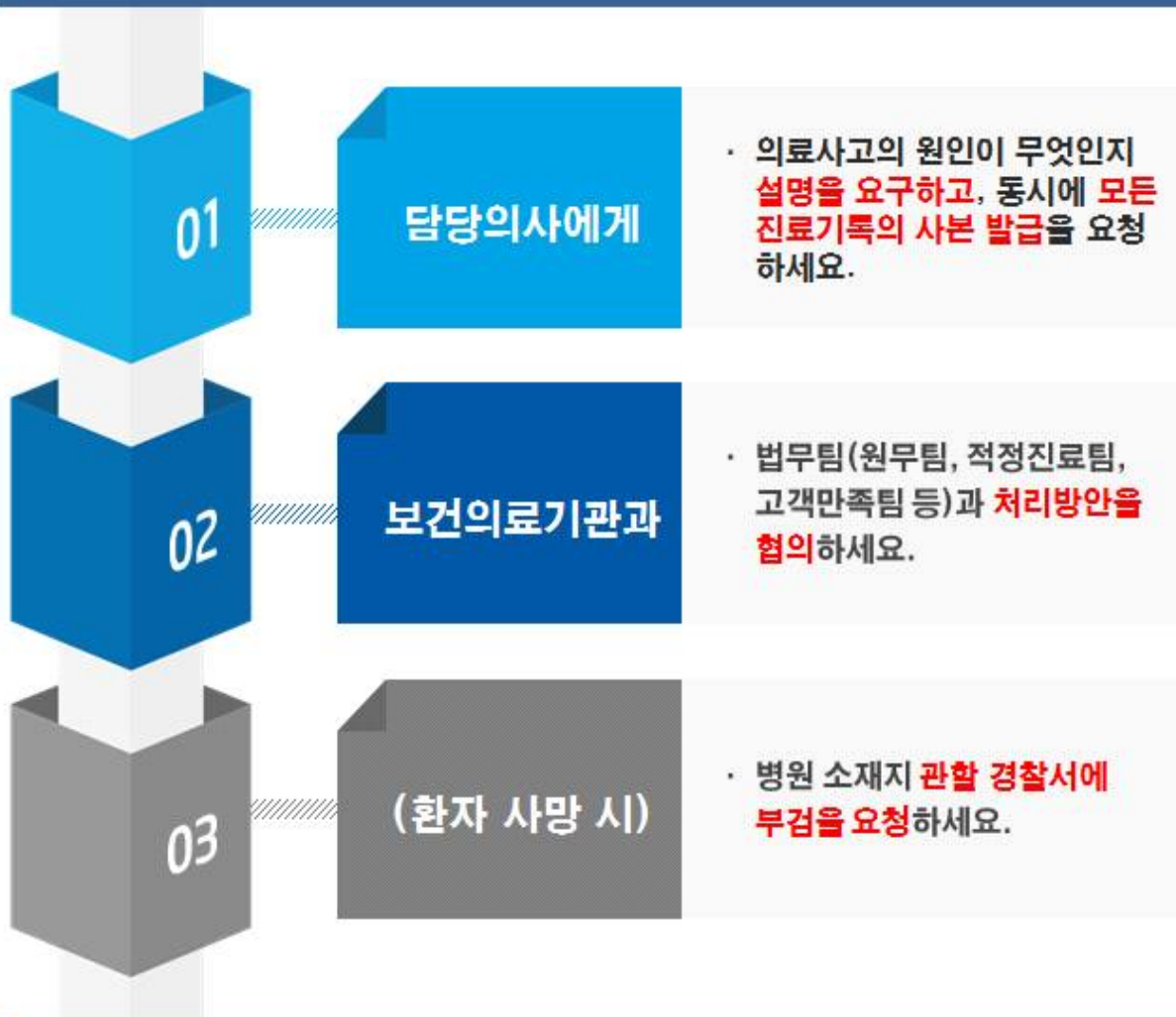


제2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의료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전문기관과 상담하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 · 2545 의료분쟁 상담센터



"The First & Best, 신뢰받는 의료중재원"

1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을 들어 보세요

- (어떻게 대응하느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는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거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대응이 앞서고 폭언과 폭행, 물리적 충돌, 경찰신고 등 사건 외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병원은 차근차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대처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흥분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수술사고, 사망사고 등 중상해 사고의 경우 이성을 잃은 보호자 중 누군가가 병원의 기물을 부수고, 의료진을 폭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받거나 환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병원 및 의료진과 극단적으로 대립함으로써 환자치료에도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의료분쟁은 업무방해 또는 폭행사건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둘째,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만나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환자의 예후는 어떠한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사고를 인지한 즉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찾아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의료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담당 의사를 뒤로 물리고 해당 과장이나 선임자를 전면에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담당의사가 참여한 상태에서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의사란 주로 주치의를 말하나, 수술한 의사, 마취한 의사, 처방 및 투약한 의사 등 나쁜 결과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추정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지식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이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의료의 특수성과 이러한 의학지식의 차이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 간에 오해와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설명을 통하여 이러한 오해를 해소한다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의료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때론 과실을 인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을 직접 만나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의료진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경위와 진행 경과를 꼼꼼하게 잘 정리(붙임1 참조)해 두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는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도 할 수 있으며 환자 측의 동선은 대부분 CCTV로 촬영되고 있으므로 말과 행동에 주의를 요합니다.



셋째, 병원을 옮기는 것(전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rapport(상호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환자 측에서 무조건적으로 병원을 옮기려고 할 수 있는데, 전원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의도와 달리 병원을 옮기고자 하여도 환자를 받아 줄 수 있는 마땅한 병원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현재 병원과 의사에게서 더 이상 치료에 대한 기대를 얻기 어렵다면 전원을 고려하되, 환자의 상태, 치료방향, 병원의 사정, 분쟁 해결 상황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현재의 병원에서 계속치료 받거나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료진과의 극단적인 대립은 자제하여야 하고, 치료 목적으로 현재의 담당의사가 다른 병원이나 의사를 소개하거나 전원을 권유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동시에, 모든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확보하세요.

-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려면) 진료기록부는 의료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료기록부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부는 적정시기에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첫째, 의료사고 발생 즉시, 모든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기 바랍니다.

다만, 진료기록은 의료행위에 따라 선 기록 후 행위, 선 행위 후 기록 등의 방식으로 병행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때에 따라 사본을 요청하는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술 사고 시 중환자실로 옮기고 응급처치 등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 행위 후 기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언제 몇 시 까지” 등으로 교부시한을 정하여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부는 위변조의 논란이 잦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방지 하고 증거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 ◆ 2018.9.28. 이후부터는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또는 수정 시 추가 기재 전 또는 수정 전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고 수정 전 원본과 추가 기재 또는 수정된 기록 모두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제1항)

둘째, 진료기록부 등이라 함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 기록부 뿐 아니라 외래기록, 응급기록, 마취기록, 수술기록 등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는 세부적으로 외래기록지, 응급기록지, 입원 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붙임2 참조) 진료기록부 사본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사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진료기록 전부를 누락 없이 복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은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서에 세부적인 항목을 각각 체크하여 신청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모든 항목을 체크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치료기간을 명시하여 사본교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X-RAY, CT, MRI. 초음파 등을 촬영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본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상물은 통상 CD 형태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넷째, 진단서, 소견서 등의 사본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치료과정에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3 사망 사고의 경우 적극적으로 부검을 고려하세요.

- (부검은 원인규명을 위한 최상의 방법)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부검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검은 두 번 죽는다는 잘못된 인식과 국민 정서상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사망원인을 해부병리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26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에게 변사체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일반적인 경우,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담하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병원이나 의사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검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와 관련된 부검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가족의 선택적인 사항이지만, 사망의 원인을 밝히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검을 통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유가족이 부검을 하고자 할 경우) ①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② 검사의 지휘에 따라 통상 2~3일 이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실시되고, ③ 부검 후 약 2달 정도 후 경찰서로 부검결과가 통보됩니다. 유가족은 경찰로부터 부검결과를 안내받거나 부검감정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건의료기관과 처리방안을 협의하세요.

- (의료분쟁 담당 부서) 병원에는 보통 법무팀, 적정진료팀, 고객만족팀, 원무팀 등의 부서에서 민원이나 의료분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전면에 나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거나 접촉해 옵니다. 이를 피하지 마시고 병원의 의견이 무엇인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 병원에서 먼저 배상액을 제안하거나 합의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라도



듣게 될 것입니다. 배상조건을 들어 보는 것과 합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병원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들어보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 (만약, 병원 측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환자 측이 위 관련부서로 먼저 찾아가 병원의 입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상 행정절차는 위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병원장이나 담당의사에게만 모든 사항을 요구하고 대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 (환자치료와 배상은 따로)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고, 배상방안은 병원 측(관련 부서)과 협의하는 것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의원급의 경우 등 진료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원장과 직접 해결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상담하세요.

- (국번 없이 1670-2545로 전화하세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의료분쟁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료분쟁은 그 특성상 환자 측의 상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재원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번 없이 1670-25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경로) 상담은 전화상담, 중재원을 내원하여 상담하는 방문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등이 있으며
- (전문 인력) 의료분쟁 전문 상담사, 다년간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한 분쟁조정 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

- (서울 본원)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8층 상담센터
※ ①, ④ 호선 서울역 하차 후 지하철 서울역 10번 출구
- (부산 지원)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3층
※ ① 호선 부산시청역 1번 출구로 나와 약 100m 직진

■ 전화 상담: (전국대표) 1670-2545 (부산지원) 051-910-7300~7301

■ 우편 상담: (우)04637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8층 상담센터

■ 팩스 상담: 02-6210-0099

■ 인터넷 상담: www.k-medi.or.kr

- 진료기록부는 상담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나, 방문상담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가져 오시고, 의료사고 경위를 요약한 자료(붙임1 참조)가 있다면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장.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의료분쟁 조정 · 중재를 신청하세요

방법 1 당사자 합의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직접 합의(① 자체, ② 의료배상보험
또는 의사협회공제회)

방법 2 대체적 분쟁 해결(ADR)

1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의료중재원)

2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소비자원)

방법 3 민·형사 소송

1 민사소송(의료소송)

2 형사소송

※ 방법 1 · 2 · 3은 순서에 관계없이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 단, 민사소송(의료소송)을 제기한
경우 ADR 이용 불가능, ADR 중복 신청 불가능



"The First & Best, 신뢰받는 의료중재원"

1

의료분쟁 당사자 합의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이 의료분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대다수의 병원들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우선 자체적인 합의를 추진하는 경향이 크고 또한 대부분 그러한 방법으로 합의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이상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원급은 의사협회공제회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보험처리를 통한 자체합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자체 합의) 경미한 사건이나 소액배상의 경우 또는 민원해소의 방법으로 병원 법무팀 등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중과실 사건의 경우에는 배상액이 크더라도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고 병원이미지 실추 우려, 소송으로 갔을 때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빠르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 (보험 처리) 병원들은 의료분쟁 처리를 위하여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사협회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① 보험사의 요청을 받은 손해사정인이 사고조사를 하고, ② 의료적인 검토, ③ 법률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의료과실 여부를 판정하여, ④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제시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외형상으로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나름의 객관적인 절차로 의료과실 여부를 검토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험의 특성 상 처리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측 의견이나 보험처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병원 자체적인 검토 의견이나, 보험처리 결과에 대하여 환자 측의 의구심은 ‘신뢰 할 수 있나?’입니다. ‘결국은 병원 측 일방의 의견일 뿐이므로 의료과실이 없다고 하거나. 있다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적게 하려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여건 상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 (조정 신청) 그러한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병원도 자체적인 검토의견이나 보험처리 결과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조정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측의 합의제시 조건을 환자 측이 신뢰하지 못하여 합의가 지연되거나 분쟁이 확대될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간이조정) 의료분쟁조정 신청 시 통상절차의 경우 개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하고 있으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과실의 유무가 명백한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에 따라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간이조정」을 통하여 신속하게 조정을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잘 조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2 대체적 분쟁 해결(ADR)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협상,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합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은 판결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대립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1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 ◇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 ◇ (목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 (운영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 (조정 신청) 의료분쟁 발생 시 당사자(환자 또는 보건의료기관) 중 일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도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피해자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 신청은 소송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양 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사전에 중재합의가 되면 중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 판정이 이루어지면 분쟁은 바로 종결되므로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2012.4.8.(법 시행일)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사건이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하거나,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리인) 신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i)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ii)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iii) 변호사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i)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조정신청은 서면신청과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신청, 팩스신청도 가능합니다.
- 조정신청서류는 필수서류로 ‘① 조정신청서, ② 조정(중재) 신청서 별지, ③ 민감정보이용동의서, ④ 신분증 사본, ⑤ 통장 계좌 사본’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등 관계 서류’, 중재 신청 시에는 ‘중재합의서’가 추가됩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관련 증빙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피신청인의 참여의사가 확인된 경우에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 수수료 납부) 조정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수료의 납부안내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22,000원에 조정신청금액에 따라 일정액이 가산되는데, 수수료가 납부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사건 처리 절차) 조정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중재원은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 (자동개시) 2016.11.30.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자폐성 장애 또는 정신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 (의료감정)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정결정) 조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조정결정 시 감정의견을 고려하고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조정절차 중 합의) 신청인은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부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결정을 한 때 중재원은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중재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모두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 (법적효력) ‘조정이 성립’ 되거나,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중재판정에 의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및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여 각하 된 경우’에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하거나 소송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가제도)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성립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담사례, 감정사례, 조정·중재 사례 등은 홈페이지(www.k-medi.or.kr) 알림마당,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 ◇ (근거) 소비자기본법
- ◇ (목적)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
- ◇ (운영기관)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한 결과 ‘피신청인의 참여 부동의에 의한 조정신청 각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이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복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즉,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절차 진행 중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불가능하고,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의료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소송이라 함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 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다투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 (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여부에 따라 1심, 2심, 3심(대법원)을 거쳐야 확정되며 1심 판결까지 평균 2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비용의 부담과 심리적 부담감은 상당한데 비하여 **의료소송의 승소율은 다른 소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 “환자가 원고인 사건의 승소율을 보면 완전 승소하는 경우는 2~4% 정도입니다. 다른 소송에 비해 승소율이 매우 낮습니다. 부분 승소 등 전체 승소율은 55% 정도입니다. 의료사고로 소송을 내면 보통 환자 측 과실을 70%나 인정합니다. 형식적으로 이겨도 보상액이 적어 변호사 소송비용을 내면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1990년대에는 원고 승소율이 70%까지 늘었는데 2000년 들어서 원고 입증 책임을 강화시키면서 30%까지 낮아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 2014.11.25. 주간경향 1102호 >



- 이는, 의사의 과실을 원고인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의 특수성상 그 과실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소송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신청인의 과실입증을 도와드립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는 ‘의료분쟁 사실조사, 의료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등의 감정절차’를 통해 신청인의 과실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재원이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조정을 합니다.
- 또한, 조정수수료는 소액이고, 조정결정은 절차개시일로부터 90일(최대 120일) 이내입니다.
- (선 조정, 후 소송) 수많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 방안입니다.
- 먼저 조정제도를 이용한 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병원 측의 참여거부가 계속되는 경우 등의 분명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료소송을 제기하여도 늦지 않는 만큼 우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 (법원 연계 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의료소송 사건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하는 법원 연계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증입니다.

-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법률구조, 소송구조를 희망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무료법률서비스 제도 등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법률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 · www.klac.or.kr	법무부 법률홈닥터 02-2110-3824 · 4252 ·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 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 · lawhomedoctor.moj.go.kr
법무부 마을변호사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서울시 다산 120 · 지정된 날짜에 읍·면·동 단위로 변호사를 배치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제도 · www.moj.go.kr/HP/MWEB/MWEB_409010.jsp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65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호 대상자,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난민, 성폭력 피해자 등 대상 무료 법률 서비스 · www.legalaid.or.kr



4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고소·고발 등에 의한 수사와 검사의 공소 제기로 시작되고, 공판을 거쳐 판결 선고로 종료됩니다. 형사소송은 증거 수집과 민사 손해배상 협상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형사책임은 죄형법정주의 원칙하에 엄격한 입증에 기초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인이 진료기록부 사본 등 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기관의 점거, 진료방해 및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방해를 해서도 안 됩니다.
- 위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적 책임은 물론, 의료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인 시위를 할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도 있고 경찰서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 다만, 피켓 등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시위 방법 등에 따라 해당 병원으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1인 시위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喪服)을 입은 채 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피고인의 목에 앞뒤로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예).
<대법원 2004.11. 25. 선고 2004도6408 판결 업무방해 등 (사) 상고기각>

- (인터넷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여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적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보건의료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이렇듯, 의료사고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환자 측이 의료 분쟁에 대한 대응을 잘못하거나 서툴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과 환자 측이 서로 법률적 분쟁을 키워 분쟁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환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고, 보건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당사자 모두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면 보건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제1항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외에는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화해중재 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같음)
- 의료사고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나쁜 결과입니다. 보건의료인은 병을 치료해 주는 은인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되고 범죄혐의를 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부득이한 고소·고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면 환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보건의료인은 민형사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 의 / 응 답



Q1.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의료법」 제22조제1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 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7조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교부를 요구받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90조(벌칙) 제17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2.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받아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치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의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허위기재가 사실이라면 해당 의사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으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의 허위 기재 등의 행위는 의료법의 규정에 직접적으로 규율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면허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 수정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만일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의 발생유무와 상관없이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실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성실하게 기재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의료진의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므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병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 결과를 기재하고 진료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 기재 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기 까지 한 이상,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Q3.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진료기록부 사본을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의료법」 제40조제1항)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제2항)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92조(과태료) 제3항제3호 ‘제40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Q4. 의료분쟁의 해결방법 중 사법적 해결방식이 있습니다. 형사적 해결과 민사적 해결이 있는데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은 다른 건가요?

□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민사책임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등 의미, 요건, 절차에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형사적인 책임은 형벌이라는 개인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체법(범죄구성요건에 해당, 위법한 행위, 책임성 인정)과 절차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증방법도 민사책임에 비하여 엄격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은 허위진단서 등 작성, 사문서 위조, 낙태,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입니다.
- 민사적인 책임은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환자에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다른 별개의 책임이므로 각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료사고로 형사책임은 인정되고 민사책임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면책되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형법)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형법」 제266조제1항),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67조)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Q5. 의료기관에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보험사와 협의하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와 협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은지요?

- 의료기관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편의상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보상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 병원에서 의료배상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청하면 보험사 담당 직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배상 여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배상 안에 대하여 환자 측이 동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병원과 환자의 합의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사가 전면에 나서다보니 마치 보험사가 당사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보험사는 편의상 대리행위를 할 뿐입니다. 보험처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병원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6.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는 부검이나 의료감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사망원인을 알 수 없거나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의료사고의 경우,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검은 과학적 감정을 통하여 과학적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부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정서 상 부검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의료감정을 통해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검) 사인(死因)·병변(病變)·손상(損傷) 등의 원인과 그 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검사하는 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www.nfs.go.kr)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범죄 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업무를 통해 사건 해결과 범인 검거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Q7.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합의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이후에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합의 이후에 배상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를 고려하여 합의하여야 하고 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또한, 합의과정에서 의료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거나 혹은 경솔하여 지나치게 불공평한 합의를 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합의 당시에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고등법원 1970. 5. 29. 선고 69나2729 판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영구불구 등 후유증이 있으리라는 것 등을 미처 예기치 못하였고 다만 당시 현출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치료경과의 호전을 기초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그 합의에 의하여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합의당시에 예상 하였던 손해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그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이 그 후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Q8. 의료사고 피해의 억울함과 의료인과 면담을 위한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1인 시위를 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이러한 집시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도된 시위로 1인이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말합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1인 시위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나 피켓에 적힌 문구나 시위방식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1인 시위가 적법하였다고 인정한 판례) 피고인들의 모(母) 갑이 안과 병원 원장 을에게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안내염으로 실명 확정 판정을 받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갑의 가족들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 을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되었습니다. 매우 후회스럽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의 수, 주위 상황, 피고인들과 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건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킴이 없이 단지 교대로 피켓만을 들고 건물 출입구 한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임.(수원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Q9.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진단이 어렵다며 진료를 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15조에는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의료인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서울동부지방법원 1993. 1. 15. 선고 92고합90 판결)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응급환자에 대하여 치료나 구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돌려보낸 응급실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하여 의료법상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인정하여 벌금죄의 선고를 유예하는 한편 응급 환자가 없었다고 보아 위 의사 등의 행위가 진료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Q10.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분쟁 상담센터 연락처는 국번 없이 1670·2545(일로쳐요·의료사고)입니다.

- 의료분쟁 상담센터의 대표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70-2545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인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남겨두시면 확인 즉시 전화를 드립니다. 공휴일 또는 주말의 경우에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우리 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에 문의 글을 남겨 두시면 익일 업무개시 일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팩스 또는 우편 상담도 가능합니다.
- 상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의료중재원 상담센터(서울본원)와 부산지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k-medi.or.kr
- 대표전화: 1670 - 2545
- 서울본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8층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및 4호선 서울역 지하도 10번 출구
(팩스) 02-6210-0098, 02-6210-0099
- 부산본원: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13층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에서 약 100m
(전화번호) 051-910-7300~1 (팩스) 051-910-7399



Q11.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2012. 4. 8.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 소비자상담센터 1372(www.kca.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 전화상담 132(www.klac.or.k)

Q12. 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조정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와 추후 제출이 가능한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 조정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는 ① 조정신청서, ② 조정신청서 별지, ③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④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신청인의 계좌 사본입니다.

- 의무기록 사본, MRI, CT, X-RAY 등 영상물 사본을 이미 발급 받아 둔 상태라면 조정신청 시 제출도 가능하며, 발급 전일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확인 후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제출하여도 됩니다.
- 이외에도 조사과정에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 관련 서류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진료기록부 등 사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은 사실관계 확인, 위·변조 예방 등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보전 차원에서 의료사고 직후 발급받아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 ※ (서식) 신청 서식은 우리 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에 신청 서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요청 할 수 있습니다.

Q13. 조정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 방문, 우편, 팩스 그리고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은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의료중재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아이디 또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으신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제출서류는 기재사항 등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한 후 수수료 납부를 안내하여 드리며 수수료를 완납하면 최종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 ※ (온라인 본인 인증)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행위를 하는 사람(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으로 본인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4. 조정신청은 당사자 중 환자 측에서만 할 수 있나요?

- ☐ 조정신청은 환자 측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일반적으로 환자 측에서 의료기관(의료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하고자 조정제도 이용신청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그러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빈도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 ※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신청) 의료행위를 한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명칭을, 개인인 경우는 보건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한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용 조정신청서 서식을 사용 하여야 한다.

Q15. 조정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요?

- ☐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서명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입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면진술 보다는 자유로운 진술도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의 위임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위임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직 증명서

Q16.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금액은 얼마 인가요?

- 조정신청액 5백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수수료는 22,000원입니다.
- 조정신청액 5백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수수료 22,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1만 원 당 20원,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만 원 당 10원의 비용이 가산되어 1천만 원 신청 시 32,000원, 1억 원 신청 시 162,000원이 청구됩니다.
- 그러나 당사자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5·18민주유공자는 신청수수료를 면제하고 장애인 1급에서 3급은 50%, 4급에서 6급은 30%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Q17.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피신청인이 절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조정 신청을 각하합니다.

- 환자가 조정을 신청하였더라도 「①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조정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④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및 형법의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⑤ 조정신청 전·후에 소송이 제기된 때 ⑥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 (의료법 제12조제23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314조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18. 피신청인이 조정절차 참여를 거부하면 조정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 조정신청을 각하처리하며 소송 상 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의 상대방(보건의료기관 또는 환자)이 조정절차에 응하겠다는 의사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은 각하처리하며 절차는 종료됩니다.

- 각하처리 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하처리 된 경우 조정신청 제출서류는 반환하고 납부 수수료도 환급하여 드립니다.

Q19. 피신청인의 참여여부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16.11.30.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 사고로 자동개시 요건을 갖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 조정절차는 개시됩니다.
- 자동개시 요건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조정 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Q20.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는 무엇인가요?

- 의료중재원에서 조정성립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의료인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의한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반의사 불벌)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과실치상죄, 단순 존속 폭행죄 및 단순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Q21.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에게 조정결정금액 지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0일 이내에 심사완료 후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된 대불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후 의료중재원에서는 해당 피신청인에게 대불금액을 구상합니다. 손해배상금 대불 신청기간은 집행권원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 집행권원이 작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대불금은 지연이자, 소송비용,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 (신청 대상) 의료중재원의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 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집행권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로서 재판상의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등을 말합니다.

Q22.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무엇인가요?

-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의 진행 중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는 분만과정에서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사망, 신생아사망, 그리고 신생아 뇌성마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 ※ 2013.4.8. 이후 발생한 분만사고 건부터 적용되며, 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폐 입



(붙임1)

《 의료사고 경위 요약 》

구 분	주 요 내 용
피해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업, 소득(자격증 소지 여부, 사업자등록, 소득세납부 실적 등)
사고발생 의료기관	피신청인(피고) 특징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주치의의 이름 및 전공, 치료받은 내용, 처음 치료받은 일시 및 장소, 의료사고 발생 추정일시, 사고 전후의 의료기관 및 치료의사, 치료비 면제 여부 등
진료 받은 이유	의료기관에 가게 된 동기
기왕증, 과거력, 과민반응 유무	현재의 증상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인지 기왕증, 과거력, 과민반응 등에 의한 것인지 판단 자료
설명 의무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설명, 경과설명, 위험설명을 하였는지 확인. 수술이나 치료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 측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파악(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몇 분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함
피해정도	- (상해) 신체의 일부에 상처가 있는 등 외형적 이상, 청력 이상, 이 · 입속 · 턱 이상, 실명 · 시야협착 · 시력저하, 사지 · 허리 등의 운동기능 장애, 식물 인간 · 부전마비 · 뇌 등 이상, 신장 · 폐 · 신장 등 장기이상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완치되었는지 혹은 더 치료해야 하는 지,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지를 확인 - (사망) 사망일시, 사망원인, 부검일시, 부검장소,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의료사고 인지시점	의료사고를 언제, 누구로부터 처음 알게 되었는 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산정에 중요함
주치의로부터 들은 내용	환자 측이 의료인을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의료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
의료과실로 추정하게 된 이유	의료사고 전후 모순된 의사의 설명, 의료진들의 이상행동 등
증거자료 존부	진료기록, 방사선 필름, 진단서, 부검감정서, 처방전, 수사기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세납세증명서 등
해결방안	사과 및 치료비 면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행정기관 고발 등 환자 측의 요구
가족관계	손해배상청구시 상속분,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는 데 파악



“The First & Best, 신뢰받는 의료중재원”

(붙임2)

《 진료기록 서식 종류¹⁾ 》

구 분		주 요 내 용
외래기록지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마다 작성되는 것으로 내원 날짜, 주소, 병력, 신체조사결과, 검사명, 검사결과, 치료계획, 진료의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응급실기록지		응급실을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작성되는 것으로 환자의 인적사항, 내원방법, 도착시간 및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 병력, 신체상태, 검사소견, 진단명, 치료사항, 환자의 처리(입원, 귀가, 다른 병원으로의 후송, 사망 등), 응급실 퇴실시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입 원 기 록 지	진단요약 색인기록지	환자가 입원한 이후 순서대로 진료내용을 요약하여 기록의 맨 앞에 첨부하는 서식으로 입·퇴원일, 진단명, 수술명, 약에 대한 과민반응, 알레르기, 특이체질 등 치료에 참고할 사항 등을 기록하기도 함
	입퇴원기록지	환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의 진단, 검사명, 수술명 등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정리
	퇴원요약지	입원기간 동안 환자 질병의 경과, 검사, 치료 및 결과에 대한 것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주치의나 담당의가 환자 퇴원 직후에 기록함
	병력기록지	입원 시 문진을 통해 환자의 병력(현 병력, 과거력, 개인력, 가족력, 신체 각계의 조사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향후 진단 및 치료의 방향을 계획하는 데 활용하게 되며 통상 수련의가 기록하며 주치의나 담당 전공의사가 검토 후 확인부서함
	신체검진기록지	병력 조사 후 환자의 신체 각 부분을 자세히 조사하여 검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통상 수련의가 기록하며 주치의나 담당 전공의사가 검토 후 확인부서함 신체검진은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의 4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상태를 조사하며,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체중 및 신장, 전신, 피부, 머리, 눈, 귀, 코, 후두부, 목, 흉부 및 폐, 심장, 복부, 요부 및 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위 병력과 신체 조사를 종합하여 잠정적 진단을 내리며 향후 치료 방향을 계획하여 기록
	경과기록지	입원기록부터 시작하여 입원 기간 중 연속적으로 기록하여 퇴원 또는 사망 시까지 환자의 치료 경과를 날짜별로 기재하는 것으로 치료 경과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음
	타과의뢰서	자기 전문영역 밖의 문제가 환자에게 발생하였거나 의심이 갈 때 보다 정확히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다른 과 전문의에게 협의 진료를 의뢰

1) 신현호·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각론, 육법사 2012, 62~100면

구 분		주 요 내 용
		하는 것으로 양식은 의뢰 내용(환자명, 등록번호, 진단명, 의뢰 사유, 의뢰과, 주치의 또는 담당의 서명 등), 회신 내용(협진을 의뢰받은 과에서 환자의 상태를 살핀 후 환자의 병력을 요약하고 진단 및 치료계획을 기재)으로 이루어 짐
	의사지시기록지	주치의나 담당의가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검사, 처치, 투약 등에 대한 사항 및 퇴원지시 사항에 대해 기재
	수술, 검사, 마취 동의서	담당의가 환자 본인 및 가족에게 수술, 검사, 마취 전에 목적, 방법, 합병증, 사망률, 예후 등에 대해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설명자의 서명, 설명이 이루어진 시점, 설명이 된 내용, 설명을 들은 환자 및 보호자의 서명 등이 기재
	수술기록지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수술과정에 대해 기록하는 것으로 수술 집도의와 보조의사의 이름과 서명, 수술 전 진단명, 수술 후 진단명, 수술명, 수술과정 및 수술상 소견, 수술 후 환자의 상태, 수술일자 등이 기재
	마취기록지	수술 중 마취의사가 수준 간격으로 환자의 상태(혈압, 맥박, 호흡, 산소 포화도 등)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마취제의 종류, 양, 마취방법, 시간, 수술명, 수술의사명이 포함
	회복실기록지	수술 후 회복실에서 회복실 간호사가 수분 간격으로 환자 상태(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의식 상태 등)에 대해 기록
	활력징후기록지	담당 간호사가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환자의 활력징후(혈압, 체온, 맥박, 호흡)에 대해 의사 지시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기재. 이외 식이, 배변 및 배뇨 횟수, 신장, 체중, 기타 배액량, 섭취량 및 배설량 포함
	투약기록지	환자에게 투여 되어지는 모든 약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약품명, 용량, 투여경로, 투여시간, 투여자의 내용이 포함
	간호정보조사지	환자 입원 당시 담당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얻어 간호의 기본 정보로 활용하고 타 의료인과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함. 환자명, 등록번호, 나이, 성별, 체중, 신장, 종교, 가족력, 가족사항, 주소, 전화번호, 진단명, 입원 경위, 배뇨 및 배변 양상, 주호소 등이 포함되며 환자 본인에게 입원 안내(식이, 병실안내, 낙상 방지, 회진시간 등) 후 서명을 받음
	간호기록지	환자가 입원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도착했을 시점부터 퇴원 또는 사망 시점까지 환자의 상태변화, 주호소, 간호 내용, 간호에 대한 환자의 반응, 의사에게 보고한 사항, 지시사항의 수행 등에 대해 간호사가 시간대 별로 자세히 기록한 것
	전과 · 전동	환자를 다른 과로 전과하거나 환자가 상주하고 있는 병원 내 장소에서



구 분		주 요 내 용
	기록지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 작성하는 기록으로 환자명, 등록번호, 전과 보내는 과, 전과 받은 과, 전동 보내는 곳, 전동 받는 곳, 전과 보내는 사유, 전동 보내는 사유 등의 정보가 기재
	임상병리검사 기록지	환자의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혈액응고검사, 전해질검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각 배양검사(혈액, 객담, 조직), 소변검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검사명, 의뢰의사, 의뢰날짜, 보고 날짜, 검사결과 등이 기재
	조직병리검사 보고서	검사, 수술시 채취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의뢰하는 검사명, 채취된 조직, 의뢰의사, 의뢰날짜, 보고 날짜, 검사결과 등에 대해 기재
	방사선검사보고서	단순방사선촬영, MRI, CT 등의 방사선 검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그 내용과 환자의 인적사항, 판독의사의 서명, 최종진단명 등을 기재
	심전도검사보고서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된 심전도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검사 결과지에 판독결과가 함께 기재
	중환자기록지	중환자실 내에서 작성 및 사용되는 기록지로 한 장의 기록지에 활력 징후의 변화, 투약, 수혈, 투여량 및 배설량, 몸무게, 식이, 간호기록지, 간호처치, 검사 및 검사결과 등이 기재
	물리치료기록지	재활의학과에서 환자의 물리치료시 작성 및 사용되는 기록지로 의식 상태, 근력검사, 관절가동력, 경련성, 기능수준을 알 수 있음
	작업치료기록지	재활의학과에서 환자의 물리치료시 작성 및 사용되는 기록지로 관절 가동력, 경련성정도 등에 대한 신체적 상태와 인지기능을 알 수 있음
	영양상담협진진료 의뢰서	환자의 영양 상담에 대한 협진의뢰시 작성 및 사용
	입원약정서	입원 시 환자에게 병원의 제반규정을 따르겠다는 점, 진료비 부분에 대해 환자 및 연대 보증인이 부담하겠다는 점, 소송에 관한 점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약정인의 서명과 연대보증인 2인의 서명을 받음
	선택진료신청서	진찰, 처치, 수술, 의학관리료, 검사,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마취, 정신 요법에 대한 신청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	상급병실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며 입원료 차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겠다는 신청서
	전원기록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경우 작성하는 기록으로 환자명, 등록번호, 진단명, 전원 보내는 사유, 전원 보내는 곳,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작성

(붙임3)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제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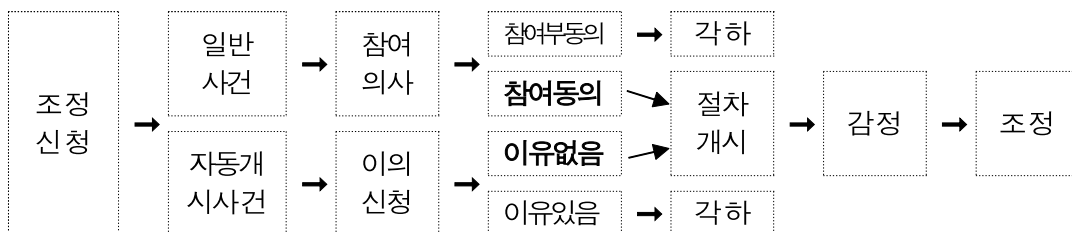
■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절차 안내 www.k-medi.or.kr 또는 ☎1670-2545

□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제도란?

- 의료사고의 신속 ·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조정 · 중재는 의료인 등 의료사고감정단의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감정을 토대로, 법조인 · 의료인 · 소비자 · 대학교수로 구성된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조정 · 중재절차에서는 상식과 조리에 따라 상호 양해를 통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조정부와 쌍방 당사자 모두 함께 노력합니다.
- 상기 절차를 통하여 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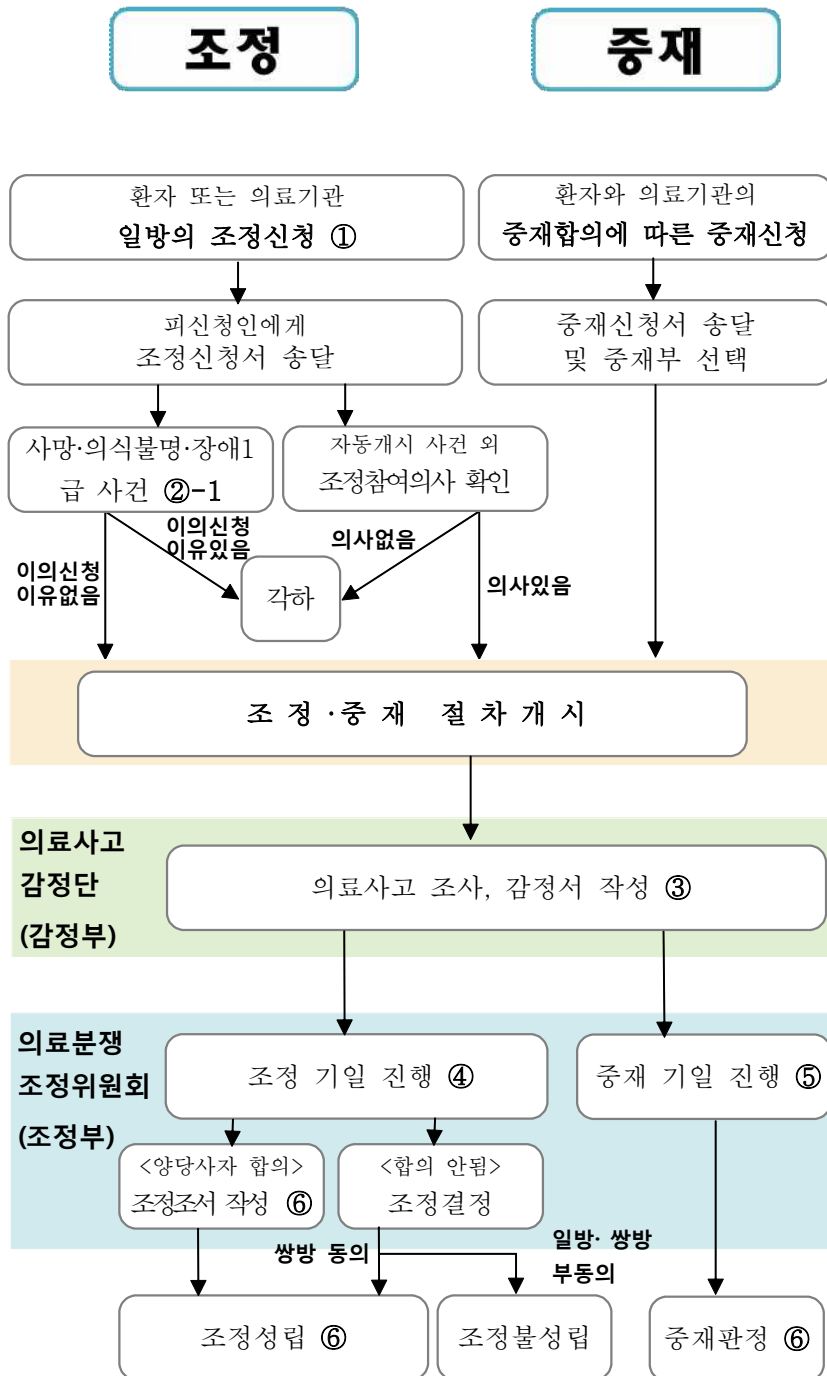
□ 처리 및 절차

- (처리기간) 조정신청이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 가능
- (자동개시 사건) '16.11.30.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사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의신청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처리절차)



"The First & Best, 신뢰받는 의료중재원"

절 차 안 내 도



① (조정) 일방 당사자가
조정신청

(중재) 양 당사자가 조정부의
결정에 따라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신청 가능

②-1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재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 조정절차가 개시됨

파산청인은 송달받은 날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유있음
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됨

②-2 조정신청(②-1 제외대상)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료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됨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됨

③ 의료과오 유무 등을 규명합니다.
감정이 종료되면 양 당사자에게
감정서 배부 가능함

④ 중재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도출·제시함

⑤ 중재절차는 조정절차에 준하여
진행됨

⑥ 재판상 화해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분쟁이
종결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30.>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하고 ()에는 해당 내용을 선택하거나 적습니다. 연락처는 지역번호까지 적습니다. (앞쪽)

사건번호 접수일 조정일 처리기간 90일(120일)

신청인	① 당사자 (환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우편번호) ※ 서류송달주소가 다른 경우 추가 표기				
		연락처	(휴대폰)		(직장)	(자택)	
		e-mail	팩스번호		문자메시지수신	[]원함 []원치 않음	
	② 당사자 (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환자와의 관계	(망) (생년월일)의 []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기타()				
		주소	(우편번호) ※ 서류송달주소가 다른 경우 추가 표기				
		연락처	(휴대폰)		(직장)	(자택)	
	e-mail	팩스번호		문자메시지수신	[]원함 []원치 않음		

신청인의 대리인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변호사 [] 그 밖에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사람()				
	주소	(우편번호) ※ 서류송달주소가 다른 경우 추가 표기				
	연락처	(휴대폰)		(직장)	(자택)	
	e-mail	팩스번호		문자메시지수신	[]원함 []원치 않음	

④ 피신청인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성명/법인명 (기관명)	연락처		업무담당자 성명	
	주소	(우편번호) ※ 서류송달주소가 다른 경우 추가 표기			팩스번호
	보건 의료인 성명	연락처			
	보건 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	[] 내과(소화기, 심장, 기타) [] 외과(일반, 성형, 정형, 신경, 흉부) []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 안과/이비인후과 [] 피부과/비뇨기과 [] 치과 [] 한방 병원·의원 [] 약국 [] 기타()			

⑤ 조정신청 내용	의료분쟁 내용	※ 자세한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은 별지에 적습니다.		
	조정신청액	수수료	※ 신청금액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환자 상태	[]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장애 1급, [] 그 밖의 경우()		

⑥ 의료분쟁 해결 시도 내용	위 조정신청 관련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신청 이전에 시도한 내역을 해당 항목에 체크(√)하시고,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의 제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 그 밖의 경우() ※ "그 밖의 경우"의 예: 의료기관(의료인)과 합의 시도, 관련 기관(단체)에 구제신청, 법원에의 조정신청 등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 조정신청 사건 관련 감정완료 시 감정서 배부를 신청합니다(수령방법: [] e-mail, [] 팩스).

년 월 일

⑦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환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환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 4. 의료분쟁의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다. 장애등급 제1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The First & Best, 신뢰받는 의료중재원"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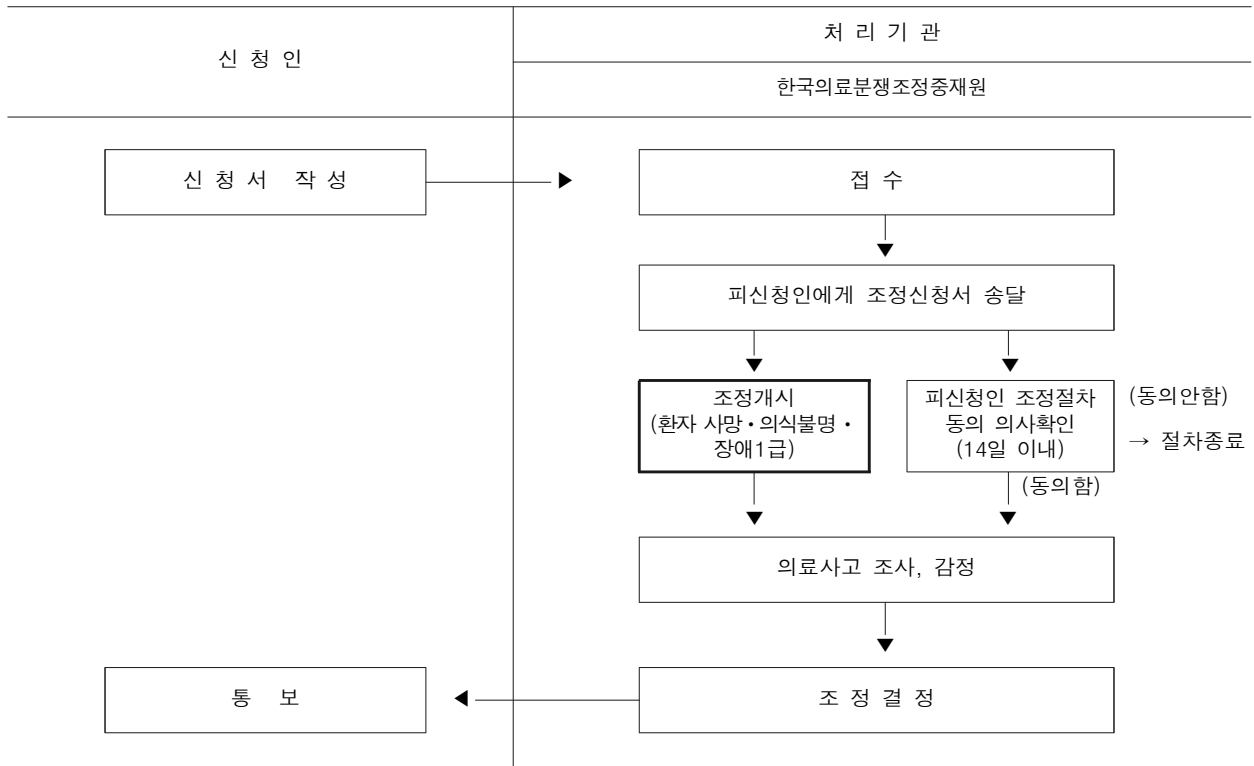
신청서 작성요령

- ① **당사자(환자)** : 환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연락처, e-mail을 기재하고,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에 체크(√)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②항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기재합니다.
- ② **당사자(상속인)** :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기재하고(사망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망한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신청하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e-mail을 기재하고,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 ③ **신청인의 대리인** :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e-mail을 기재하고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규정한 이외의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④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개인이나 법인의 명칭을 모르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의 명칭), 연락처, 업무담당자, 주소, 팩스번호를 기재하고, 의료행위를 한 보건의료인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후 진료과목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보건의료기관의 기관명은 통칭이나 약칭은 피하고 정식명칭을 기재합니다. 업무담당자, 팩스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 ⑤ **조정신청내용** : 의료분쟁 내용은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등 일일이익, 위자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에 기재하고 조정신청액은 그 청구내역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수수료 2만2천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500만원 초과 시 1만원 당 20원(5천만원 초과시 10원)을 가산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수수료를 감액(장애인 1~3급은 50%, 4~6급은 30%) 받을 수 있습니다.
- ⑥ **의료분쟁 해결 시도 내용** : 해당 항목에 반드시 체크(√)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⑦ **신청인**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조정신청사건 관련 감정완료 시 감정서는 1회에 한하여 무료 배부될 수 있으므로, 배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령 가능한 e-mail 또는 팩스번호 반드시 기재 요망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조정(중재) 신청서 별지	환자 작성용
■ 이 기록지는 사고내용의 판단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된 내용은 상대방에게 제도이용 및 답변(해명) 요청을 위한 자료로 그대로 송달되오니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작성금지)		

1 환자 관련

환자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국적	
환자 상태	☐ 치료중, ☐ 완치, ☐ 사망, ☐ 장애						
환자 직업	☐ 직장인, ☐ 자영업자, ☐ 농어민, ☐ 주부, ☐ 학생, ☐ 무직, ☐ 기타 ()						

2. 진료 전 환자 상태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진 의료기관을 최초로 내원(진료)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20 년 월 일]
2.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게 된 주요 증상 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과거 앓았던 질환 또는 현재까지 앓고 있는 질환(기왕병력)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1. 기왕병력이 있는 경우 어떤 진단명으로 무슨 치료를 받았습니까? (치료기간 포함)
① 진단명 :
② 의료기관 및 치료기간 :
③ 치료방법(치료종결여부 포함) :

3 진단 및 진료처치 사항 <사건 경위>

※ 진단 및 처치, 경과사항 등 일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7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페이지 참조>	
1. 환자의 증상에 대한 담당 의료인의 진단결과 및 관련 설명은 무엇입니까?	
1-1. 검사(복수응답 가능) : [☐ X-ray, ☐ CT, ☐ MRI, ☐ 내시경, ☐ 혈액, ☐ 혈압, ☐ 기타 ()]	
1-2. 진단명 :	
1-3. 진단결과에 대한 설명내용 :	
2. 진단 후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에 동의를 하였습니다습니까? [☐ 예, ☐ 아니오, ☐ 기타()]	
2-1. 설명 방법 : [☐ 구두, ☐ 서면, ☐ 구두+서면, ☐ 없음, ☐ 기타()]	
2-2. 설명한 의료인 : [☐ 담당의, ☐ 간호사, ☐ 상담실장, ☐ 기타()]	



- 2-3. 설명에 동의한 사람 : [☐ 환자 본인, ☐ 보호자(관계: _____), ☐ 기타(_____)]
- 2-4.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내용 :
3. 진단결과(진단명)에 대한 담당 의료인의 치료방법 관련
- 3-1. 진료를 담당한 진료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3-2. 진료 받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진료형태: ☐ 입원, ☐ 외래]
- 3-3.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간략기재) :
4. 진료 후 환자에게 발생된 주요 증상(악결과) 관련 <사건발생>
- 4-1. 사건은 언제 발생되었습니까? [20 년 월 일]
- 4-2. 사건이 발생한 신체 부위와 그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
- 4-3. 사건발생에 대한 담당 의료인의 주요 처치는 무엇입니까? (처치방법, 처치기간, 관련설명 등)
- 4-4. 담당 의료인의 처치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 사건 발생 후 경과사항

1. 이 사건발생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1-1. 추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명(진료과 포함) 및 치료일자 :
- 1-2. 치료종류(입원/외래) 및 치료기간 등 :
2. 현재 상태와 관련하여
- 2-1. 환자는 현재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2-2. 향후 추가 치료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치료계획 등)
- 2-3. 환자의 현재 상태 또는 예후 및 향후 소견(장해율 포함) :

3. 의료기관 측과 협의한 내용에 관하여

3-1. 사건발생 후 담당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이 과실 또는 책임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

3-2. 당사자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 :

5 사건발생 인과관계 사항

1. 담당 의료인의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예, ☐ 아니오]

1-1.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거나 과실(과오)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2. 진료와 사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 사건발생 및 증상악화에 환자측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기왕병력 포함) :

6 조정신청금액(손해배상) 산정

※ 손해배상 산정내역은 우리 원의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객관적 사실과 증빙자료를 반영하여 기재하며, 만일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정신청금액의 산정 내역

1-1. 조정신청금액(총액) : _____ 원

1-2. 조정신청(손해배상) 산정내역

구분		산정금액	산정 근거
적극적 손 해	① 치료비	_____ 원	[이미 지출한 치료비를 기재]
	② 향후 치료비	_____ 원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기재(향후 추정치료비계산서)]
	③ 개호비(간병비)	_____ 원	[치료기간 동안 간병 및 치료 후 후유장애에 따른 개호비를 기재]
	④ 기타	_____ 원	[장례비, 의료보조장구 등 비용을 기재]
소극적 손 해	① 휴업손해	_____ 원	[이 사건으로 일하지 못한 소득상실분을 기재(상실기간 포함)]
	② 일실이익	_____ 원	[후유장애 발생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소득상실분을 기재(상실기간 포함)]
위자료	① 위자료	_____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액을 기재]

7 진료 및 처치내용 <상세내용 기재>

1. 진료 및 처치내용(수술/시술/치료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연도·날짜·시간대별로 기재하시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추가 기재해주세요)

[illegible]

8 기타 의견 (필요한 경우 기타 참고내용, 추가적인 의견 등을 간략하게 작성)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인 : _____ (인)

<조정절차 개시되는 경우 필요서류> : ① 해당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사본(영상기록 포함),
② 이송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사본(영상기록 포함, 소견·진단서,
③ 일실소득 상실시 소득 관련 증빙,
④ 기타 증빙 또는 참고자료 등

[별지 제18호서식]

의료분쟁 중재신청서(환자측용)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하고 ()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 연락처는 지역번호까지 기재.

1. 당사자

가. 신청인 ※ 여러 사람인 경우는 별지에 기재.

신 청 인	본 인	성 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우편번호) ※ 서류송달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도 기재					
		연락처	(직장)		(자택)		(휴대폰)	
			(e-mail)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당사자와의 관계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변호사 ☐ 그 밖에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					
		주 소	(우편번호) ※ 서류송달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도 기재					
		연락처	(직장)		(자택)		(휴대폰)	
(e-mail)			@					

나. 의료사고의 피해자

☐ 사망 ☐ 상해 ☐ 기타	성 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신청인과의 관계					

다. 피신청인 ※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이름을 기재. 여러 보건의료기관이 관련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

피 신 청 인	개인인 경우	성 명		상호명		
		주 소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 :	팩스 :	이메일 :	@
	개인이 아닌 경우	법인·단체명		상호명		
		주 소	(우편번호)			
		대표자	성 명		직 책	
			성 명		직 책	
		업 무 담당자	연락처	(직장)		(휴대폰)
				(이메일)		@

라. 관련 의료인 ※ 직접 환자에 대하여 의료행위 등을 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

성 명	소속부서
진료과목 (분야)	* 의료사고가 문제된 진료과목을 기재

2. 신청취지

신청금액	원
수 수 료	원

* 신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별지에 각 신청인 별 신청금액을 기재

3. 신청이유

가.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의 개요

* 별지에 상세하게 기재

나. 신청금액 내역

[]	이 사건 사고로 실제로 돈이 들어갔거나 들어가게 되어 입은 손해	원
[]	이 사건 사고로 장차 얻을 수 있는 돈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	원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	원

※ 내역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4. 첨부서류 ※ 신청인 등은 아래 서류를 첨부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숫자 7개가 인식될 수 없도록 제출

V 표시

1	당사자간 중재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과 의료사고의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등)	
3	피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경우 법인격 또는 대표자에 관한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등)	
4	위임장(대리인 신청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분쟁의 중재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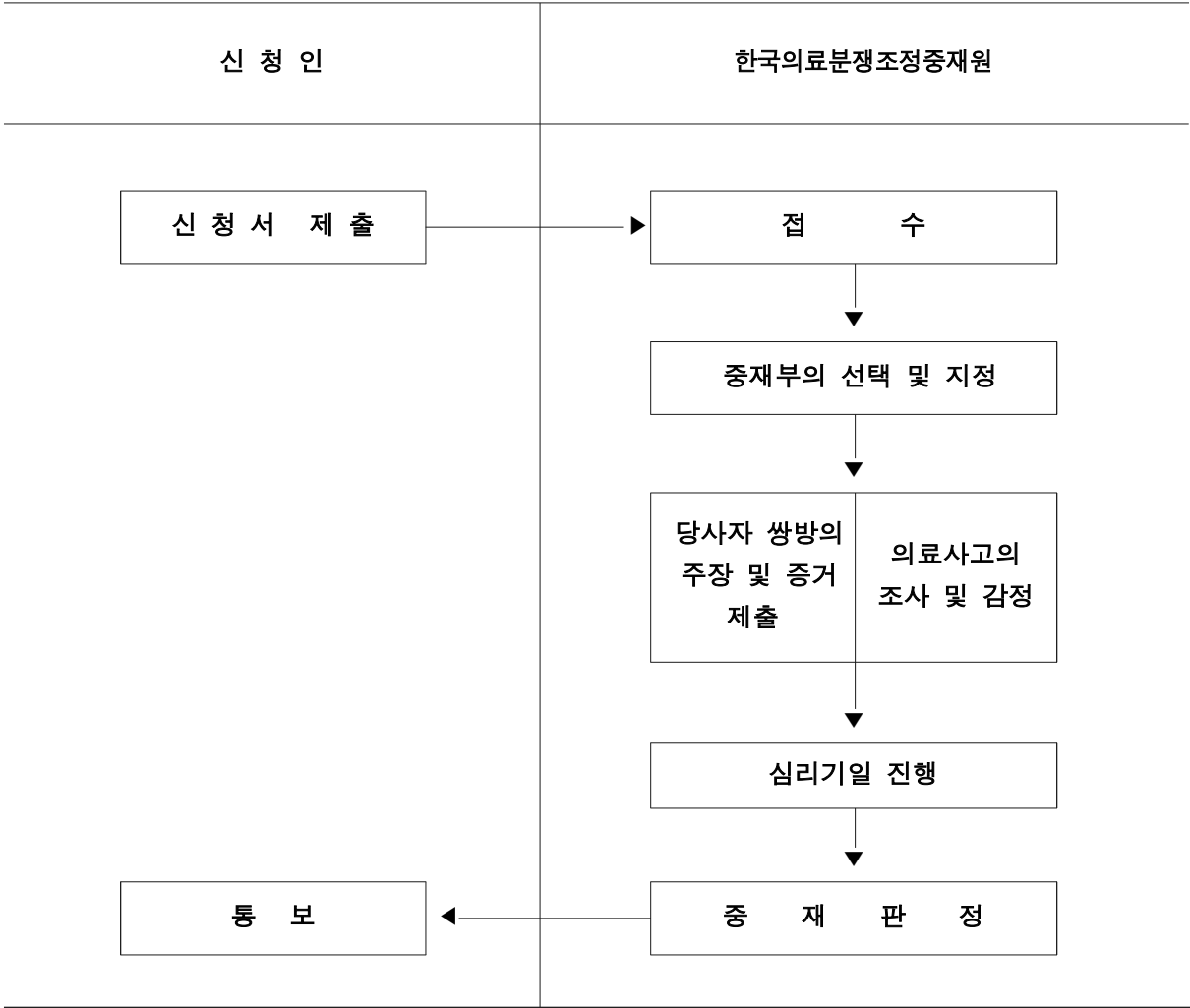
20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뒤쪽)

사건 처리절차



[별지 제19호서식]

중 재 합 의 서

· 합의인(갑) :

· 합의인(을) :

위 합의인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위 중재판정에 대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 아 래 -

(1) 분쟁내용의 요지 :

(2) 부가사항 :

20 년 월 일

위 합의인(갑)

위 합의인(을)

당사자명 : _____

주 소 : _____

대 표 : _____ (서명 또는 기명날인)

_____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전화번호 : _____

대 리 인 : _____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신청인 등은 위 서류를 첨부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숫자 7개가 인식될 수 없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귀중